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0
------------	------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 의 자 : 박남춘 · 김철민 · 인재근

윤소하 · 박찬대 · 김정우

송영길 · 김영진 · 이재정

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항 제2호).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221원”을 “221원과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